

2019년도 제1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8. 7.(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 전용준(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안건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8건(안건번호 제2019-88847호~88946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 중에는 음악 IDOL (방탄소년단), 음악 HOME (방탄소년단), 음악 인사(멜로방스), 음악 헤어져줘서 고마워 (벤) 등, 방송 현자의 손자 (2019), 방송 로비 하치 (2019) 등의 사안들로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 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B 위원 : 본건 심의대상은 음악, 애니메이션 등의 불법복제물로서,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 기타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없기 때문에,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C 위원 : 88847호부터 88946호까지 100건은 <헤어져서 고마워>, <Bad guy> 등의 최신 가요와 팝송 그리고 <현자의 손자>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무단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

2019년 제143회 저작권보호심의회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7.

분과위원장 전용준

위원 임진모

위원 박성호